

II.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

글 · 안기봉 이사 AIG손해보험 특종보험부

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개요

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(중간판매인 VENDOR 포함)가 제조, 판매 및 공급한 생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- 일반적으로 판매된 후를 말함 - 생산물의 소비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(일반적으로 소비자)에 대한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공장 또는 구내 밖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야 한다.

(피보험자 구내에서의 발생은 영업배상책임으로 담보)

완성작성 배상책임보험이란 제품의 시설, 설치 및 수리 등이 완성된 뒤에 피보험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양된 뒤에 제품의 시설, 설치 또는 수리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제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. 단, 당해제품 및 수리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나 그와 연계된 기계시설 또는 그외에 사용자의 재물은 담보되며 그 배상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보험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.

현재 미국내에서는 연간 약 150만건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는 미국내의 법조계, 소비자보호그룹, 기타 압력단체 및 언론계 등이 매스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제조업자 및 보험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.

제조물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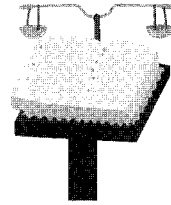
- 제조 및 공급한 생산물, 판매한 상품, 유통이나 배달된 상품 또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수리된 상품.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완제품만이 아니라 부품, 원자재, 반제품 또는 포장까지도 생산물로 간주한다.
- 생산물의 포장, 용기 및 기계나 장비에 부착 또는 제공된 부속 또는 부품
- 모든 사용방법
- 모든 안전에 대한 "주의 및 경고문"
- 기타 제품에 관한 문구

즉 생산물이란 원료, 반제품, 완제품 포장 또는 중간상인이 재포장, 형질변경 또는 완성작업 등을 포함한다.

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품 즉, 생산물이 제3자(소비자)에 판매되어 그 생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한다. 가령 그 생산물이 팔렸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공장구내나 피보험자의 영업장소에 보관시 사고가 나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된다.

생산물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의 결과는 ?

- a. 제조된 생산물이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경우
- b. 고안 또는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



- c. 안전성이 결여된 물품이 있는 경우
- d. 부적절한 사용방법 및 보관/유지방법
- e.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고를 게을리한 경우
- f. 결함있는 제품을 시판했을 시 그 제품들을 회수 또는 교정이나 개수를 게을리 했을 때
- g. 기타

주) 이러한 생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 및 구매자에게 잠재 또는 예견되는 위험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또한 잠재된 모든 안전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제조업자의 기본 책임이다.

미국내 생산물 배생책임 비용이 높은 이유

- a. 미국내 의료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이 고액이다.
- b. 전문기관을 통한 생산물 성질 파악, 결함,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문 등 소비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는지를 법정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소요가 많아 생산물 배생책임보험 처리비용이 높다.
- c. 판결전에 조사해야 할 생산물의 결함이나 제조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환경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발견 및 입증 등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잔무 등 장시간 소요되므로 비용이 높다.
- d. 비전문가인 배심원이 피해액을 결정한다.
- e. 원고인 피해자에게 가는 보상보다는 변호사비용이 더 높다
- f. 소송의 승자인 원고에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부수적인 변호사 비용이 문제이다.

엄격배생책임

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생산물과 연관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(제조업자, 판매업자 등)이 그 배생책임의 경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유럽경제공동체제의 생산물책임보험 규정의 영향

1987년 7월 1일부터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물 배생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채택하였으나 그 영향은 북미지역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.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은 자국 생산물/산업체를 보호하려는 각자의 이해정도에 따라 더욱 강화되리라 전망된다.

○ 상행위를 통한 엄격배생책임의 관련자

- a. 원료 제조업자
- b. 부품 제조업자
- c. 부품 수입업자
- d. 완제품 제조업자
- e. 완제품 수입업자
- f. 도매업자
- g. 소매업자

○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생산물을 공급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책임을 져야 한다.

○ 생산물 배생책임보험은 제조 또는 부품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든지 간에 적용된다. 즉 우리 수출품에도 미국내의 연방법인 소비자안전보호법(Consumers Products Safety Acts)에 해당된다는 뜻이다.

○ 상기 상행위를 통한 관련자 모두 책임이 있다.

○ 방어나 항변은 극히 제한적이다.

○ 생산물의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생산물 배생책임보험의 생산물에 대한 담보범위는 상상을 초월한 많은 위험들이 있다.